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2013년 11월 29일 정지숙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2013년 11월 18일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만개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해야 할 예술권리 명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문 수록 (안 제2조 및 별표)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실천 (안 제3~4조)
  -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구현
  - 도의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실천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헌법」 제22조 1항의 예술의 자유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헌법상 의무로 주민이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확인·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임.
- 다만 도민의 예술권리에 관한 조례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언적 내지 프로그램적인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반화하여 규율하는 것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본 조례안은 지역 차원에서 예술권리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창설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도민의 예술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한다거나,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1부.